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5354487 판결 [보증금청구 등]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심지윤, 이예린

피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변론종결 2023. 4. 12.

판결선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증서의 발급

피고는 2019. 4. 4. '피보증인: A(기업체명: B), 보증 상대처: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장,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20. 4. 3.까지'로 기재된 전자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등

1) 2019. 4. 11. 'A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0. 4. 3.까지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A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이 사건 보증서와 A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1. 대출금 100,000,000원을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

1) A가 2020. 6. 2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3158호로 망 C이 A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A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는, 원고와 A 사이에 2019. 4. 11.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여신거래약정서), 을 제3호증(대출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원고가 2020. 11. 30. 제출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A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A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 10. 1. 'A의 원고에 대한 2019. 4. 11.자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기한 1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 명의의 이 사건 보증서 발급시, A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고, 피고의 내부규정상 요구되는 A 운영 사업체의 기술평가, 기업조사, 보증심사 등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믿고 이 사건 대출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결국 이 사건 대출의 신청 행위자와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보증서의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7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보증서 발급을 통해 각 경제적 주체가 되는 원고와 피고로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익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1)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